

[충북지식재산센터 2026년 2차 IP나래 사업공고문]

2026년 IP 나래 프로그램 하반기(2차) 지원사업 모집 공고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나래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내용

- (지원내용) 100일 내외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구분	지원내용
IP(지식재산)기술전략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IP(지식재산)경영전략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5,0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40% (현금 20%, 현물 20%)
 - *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장애인 기업 의 경우 현금 15%(현물 25%)로 기업분담금 감면
-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1건 및 IP(지식재산)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2. 지원 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공고일 기준 만 7년(신산업 창업 만 10년)을 초과하지 않은자)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년 5월 6일(수) ~ 2026년 6월 4일(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pms.ripc.org)
-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본점)·지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
 - 법인기준 1사(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 *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제출서류)

필수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유효기간 만료시 심사대상 제외 · 창업기업확인서** : *유효기간 만료시 심사대상 제외 · 사업추진(활용)계획서([붙임1] 양식) : 2026년 양식 필히 사용, 이전년도 양식 사용시 심사 대상 제외 예정
선택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가점 증빙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전년도 無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 간이과세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예비)사회적 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가점증빙 제출 서류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시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必)

**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

- (가점사항) 가점항목 해당시 가점 각 2점, 최대 6점까지 인정
 - * 각 가점은 사업 공고 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함(청년여부, 여성기업 등)

** 특허로제품혁신지원사업('25년)은 IP제품혁신지원(~'24년이전), 특허기반사업화R&D사업('26년이후)에 해당

가점항목	증빙서류	가점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2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2
청년창업기업	주민등록증 등	2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	2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서	2
지역특화산업	신청서 내 KSIC 코드 기재	2
IP디딤돌 수혜기업	신청서내 기재(제출서류 없음)	2
KIPA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 기업	계약서, 협약서 등	2
K-스타트업 왕중왕전 출전 기업	관련 대회(행사) 출전·수상 확인서, 증빙문서 등	2
지식재산처 연계 디캠프 D데이 출전 기업		2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한국발명진흥회)	해당사업 수혜이력 확인가능 문서(협약서 등)	2
특허로 제품혁신지원사업(한국발명진흥회)*		2
IBK창공(IBK기업은행)	연계사업 수료증 및 선정 공문	2
넷제로 챌린지X 선정 및 수혜기업	지원이력 증빙가능한 문서 (협약서 등)	2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자**	한국특허정보원 추천 공문	2

4. 선정절차

- (현장실사) 서류 제출 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 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 * 현장실사는 기업작성 간이 KIT고득점 순으로 센터별 지원건수의 4배수 내외로 실시
 - **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부적격 기업은 간이 KIT점수와 무관하게 1차 불선정 처리
- (1차 선정)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
- (2차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 * 별도의 신청기업 발표심사는 없음

5. 사업수행절차

- (수행사 선정) 5배수 수행사 추천(컨설턴트) → 참여 수락(협력기관) → 수행사 선정(신청기업)
 - *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의 보유기술, 제품·서비스, 사업분야 및 협력기관의 수행인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을 추천
 - ** 추천 전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
- (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
- (컨설팅 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
 - * 8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

- (최종보고 및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 (최종보고 및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6. 사업간 중복지원 제한 사항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IP기반 해외진출지원) 사업 지원기업 및 졸업기업 지원 불가, 지식재산 긴급지원 지원기업 중 IP나래 신청기술 내용과 동일 기술내용 지원 금지(특허맵, PCT출원 해당)

7. 문의처 및 관할지역

센터명	연락처	관할구역
충북센터	043-229-2736	청주, 진천,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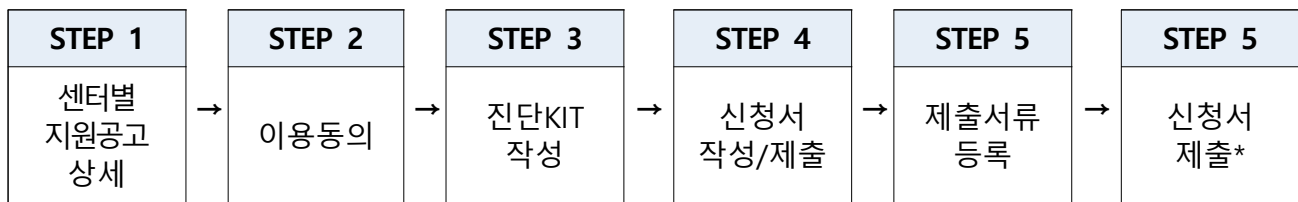
참고1

참고사항

신청 사이트 안내

(1)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을 통한 접수

- 기업회원 가입 필수
- 사업관리시스템은 공동인증서로 서비스 이용 가능
 - * 공동인증서는 기업명의로 발급된 공동인증서에 한함
- [지원사업공고] → 센터별 [2026년 IP 나래 프로그램 2차 공고] → [지원사업신청]
 - * 지역센터별 지원공고를 클릭하여 신청
- 신청절차



* 제출서류 등록 후 최종 단계에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사업 신청현황에서 해당 접수건에 대한 진행상태를 반드시 확인(정상접수시 진행상태 “접수완료”로 표기됨)

필수동의사항

※ 아래는 사업 신청시 필수 동의 사항으로 항목별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및 동의 후 신청

- (1)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신용 / 지원 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활용을 위한 동의
-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
- (4) 기업 분담금 납부 동의
- (5) 지원금 반납 서약서

기업진단 KIT

※ 기업 현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응답

유의사항

- (1) 현장실사 및 선정심사는 제출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심사(작성중인 경우 제외됨)
- (2) 기업 소재지 및 관할의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확인하여 해당 지역으로 신청
- (3) 선정 후에 기업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선정취소, 중단 및 환수될 수 있음

* 지역 예산이 매칭되어 운영되는 사업으로 선정 후 지역이동 불가

신산업창업분야

(1) 신산업 창업기업 해당여부는 2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

① 인공지능	⑧ 스마트제조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⑳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② 빅데이터	⑨ 시스템반도체	⑯ 미래형 선박	㉑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③ 5G+	⑩ 자율주행차	⑰ 재난/안전	㉒ 우주
④ 블록체인	⑪ 전기수소차	⑱ 스마트시티	㉓ 차세대 원전
⑤ 서비스플랫폼	⑫ 바이오	㉔ 스마트홈	㉕ 양자
⑥ 실감형콘텐츠	⑬ 의료기기	㉖ 신재생에너지	㉗ 사이버 보안
⑦ 지능형 로봇	⑭ 기능성 식품	㉘ 이차전지	

지역특화(주력)산업 가점

(1) 첨부 1의 지역별 특화(주력)사업 관련 KSIC코드를 입력

* 참고파일 : [참고_지역특화] 지역별_주력산업_참고용(개편후 KSIC코드)

* 지역 주력산업이 개편되는 경우 개편된 산업을 적용

(2) 지역특화(주력)산업 수행관련한 사업현황 및 업종, 관련 KSIC 적합여부 등을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컨설턴트가 검토하며 최종적으로 2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가점 부여

지역	지역주력산업분야
충북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청

(1)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시 신청가능

*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 이후 본사로 통폐합되어 폐업되는 경우 선정 취소

(2) 신청요건 : 아래의 신청요건 및 증빙첨부

(3) 본사와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확인시 선정심사대상 제외)

구분	신청 요건(모든항목 충족)	증빙
지사(지점)	① 지사(지점)의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② IP나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현물 투입 인력의 주 근무지가 지사(지점)인 경우	① 사업자등록증과 연계된 해당 인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지사(지점)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① 기업부설연구소의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② IP나래 프로그램을 실제 수행하면서 현물 투입하는 인력이 해당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증 ②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③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참고2

통합신청서 작성요령

기업현황

※ 신청서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입력

- (1) 기업정보 최신화 : 기업명 및 기업유형(법인 또는 개인), 기업소재지는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사업관리시스템의 기업정보 업데이트 필수
※ pms.ripco.org → 로그인 → 회원관리 → 기업정보관리 → 수정
* 기업정보관리 내 담당자 정보 IP나래 수행 전담자 정보로 수정 필요
- (2) 기업유형 : 법인인 경우는 법인기업, 개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개인 기업 선택
- (3) 중소기업구분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여 기재 예)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4) 총 임직원수 : 신청당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작성
- (5)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번호기재
- (6) 대표자 : 대표자 전부를 기재
- (7) 소재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등본상의 주소와 실재가 다를 때에는 2개를 모두 기재)
- (8) 주생산품 : 해당기업의 주력생산품 기입(복수입력 가능)
- (9) KSIC 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표를 기준으로 기재
- (10) 설립일자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예: 2021. 7. 6)
- (11) 신산업 창업기업 해당여부 : 신산업 분야 영위 기업의 경우 해당 체크
- (12) 공고문 상의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분야를 기재
- (13) 센터지원사업 수혜여부 : 기존에 지역센터에서 지원받은 사업의 연도와 사업명 기입
* IP디딤돌 수혜이력 기업의 경우 반드시 기재(가점부여)

일반현황

- (1) 매출액 : 최근 3개년 매출액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재무제표 기준)
- (2) 고용인원 : 최근 3개년 고용인원 기재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 (1) 출원건수 : 창업 후 현재까지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누적건수 기입
(예 : 창업 후 현재까지 출원한 특허가 20건이고 그중에 10건이 등록되었더라도 20건 입력)
- (2) 등록건수 : 창업 후 현재까지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누적건수 기입
- (3) 지식재산 활용여부
 - 자사실시 :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자사 생산제품/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에 활용한 건수 기재

- 양도(라이선스 out) : 최근 3년 동안 자사가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타사에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건수 기재
- 매입(라이선스 in) : 최근 3년 동안 외부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을 매입하거나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을 설정 받은 건수 기재

지식재산 경영 인프라

- (1) IP(지식재산)인력 : 지식재산 관련 업무 담당인력의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 (2) IP(지식재산)인력 현황 :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구분하여 인원수 기재

<IP(지식재산)인력의 개념>

- 전담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인력
- 겸임인력 : 지식재산 관련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인력

- (3)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 보유 여부 :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여 사내규정으로 도입한 경우 보유로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보유로 선택
- (4)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여부 : 보유 유무에 따라 선택
- (5)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번호 : 인정받은 연구소는 인정번호를 기재

참고3 제출서류 등록 참고사항

- ※ 첨부파일 중 사본은 이미지나 PDF형태로 첨부
-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만료 전의 서류에 한해 인정

필수 첨부파일 등록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신청시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법인가업에 해당(법인가업은 필수 제출)
- (3) 중소기업구분 입증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중소기업범위
→ 중소기업여부자가진단 → 회원가입 →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 (4) 창업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
→ 창업기업 자가진단 → 회원가입 → 창업기업확인서발급신청

*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

(5)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전년도 양식 사용 시 불선정 처리

(6) 간이 KIT : 간이키트 작성

선택 첨부파일 등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

(1) 재무제표 : 최근 3년간(또는 직전년도) 사본

(2)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 사본

가점증빙 서류 등록

(1) 장애인기업 인증서 사본

(2)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 신분증 불가

(3) 청년 창업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번호 뒤 7자리 제외하여 첨부

(4)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5)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 사본

(6) 지역특화(주력산업) : 온라인신청서 작성시 기재

(7) IP디딤돌 수혜기업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기재

(8) KIPA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기업 : 협약서, 계약서 등

(9) 스타트업 지원 관련 대회 출전 기업 (K-스타트업 왕중왕전 출전 기업, 지식재산처 연계 디캠프 D데이 출전 기업) : 관련 대회(행사) 출전·수상 확인서, 증빙문서 등

* 공고문상 언급된 2개 대회에 한하여 가점적용

(10) IP관련 유관사업 수혜기업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특허로제품혁신지원사업)

: 지원 이력 확인가능한 문서(협약서 등)

* 특허로제품혁신지원사업(25년)은 IP제품혁신지원(~'24년이전), 특허기반사업화R&D사업(26년이후)에 해당

(11) 사업 연계기관 사업 수혜 및 수상기업 (IBK창공*(IBK기업은행), 한국특허정보원**)

: 수료증 등 지원 이력 확인 가능한 문서

* IBK창공 수료증(참여 중인 기업은 참여확인서 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자로 한국특허정보원의 추천을 받은 자(지원기업 제출자료 없음)

(12) 넷제로 챌린지X 선정 및 수혜기업 : 지원이력 증빙문서

기타증빙 서류 등록

(1) 전년도 무매출기업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24년 1기, 2기 반영자료 제출

- 간이 과세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 금년도 창업기업은 해당없음

* 창업의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참고3

제출서류 등록 참고사항

- ※ 첨부파일 중 사본은 이미지나 PDF형태로 첨부
-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만료 전의 서류에 한해 인정

필수 첨부파일 등록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로 신청시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
-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법인가업에 해당(법인가업은 필수 제출)
- (3) 중소기업구분 입증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 중·소기업 범위 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중소기업범위
→ 중소기업여부자가진단 → 회원가입 →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

- (4) 창업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방법] 창업기업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
→ 창업기업 자가진단 → 회원가입 → 창업기업확인서발급신청

*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

- (5)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전년도 양식 사용 시 불선정 처리
- (6) 간이 KIT : 간이키트 작성

선택 첨부파일 등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

- (1) 재무제표 : 최근 3년간(또는 직전년도) 사본
- (2)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 사본

가점증빙 서류 등록

- (1) 장애인기업 인증서 사본
- (2)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 신분증 불가
- (3) 청년 창업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번호 뒤 7자리 제외하여 첨부
- (4)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5)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 사본

- (6) 지역특화(주력산업) : 온라인신청서 작성시 기재
- (7) IP디딤돌 수혜기업 :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 기재
- (8) KIPA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기업 : 협약서, 계약서 등
- (9) 스타트업 지원 관련 대회 출전 기업 (K-스타트업 왕중왕전 출전 기업, 지식재산처 연계 디캠프 D데이 출전 기업) : 관련 대회(행사) 출전·수상 확인서, 증빙문서 등
 * 공고문상 언급된 2개 대회에 한하여 가점적용
- (10) IP관련 유관사업 수혜기업 (민관협력 IP전략지원 사업, 특허로제품혁신지원사업)
 : 지원 이력 확인가능한 문서(협약서 등)
 * 특허로제품혁신지원사업('25년)은 IP제품혁신지원(~'24년이전), 특허기반사업화R&D사업('26년이후)에 해당
- (11) 사업 연계기관 사업 수혜 및 수상기업 (IBK창공*(IBK기업은행), [한국특허정보원**](#))
 : 수료증 등 지원 이력 확인 가능한 문서
 * IBK창공 수료증(참여 중인 기업은 참여확인서 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자로 한국특허정보원의 추천을 받은 자\(지원기업 제출자료 없음\)](#)
- (11) 넷제로 챌린지X 선정 및 수혜기업 : 지원이력 증빙문서

기타증빙 서류 등록

- (1) 전년도 무매출기업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24년 1기, 2기 반영자료 제출
 - 간이 과세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 금년도 창업기업은 해당없음
 * 창업의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